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75p	개념, 공식-설명	<table><tr><th>구분</th><th>중분가지 배분액 *1, 가의 가중 *</th></tr><tr><td>면적비</td><td>$\frac{[(a + b) \times r - ap - bq]}{(a + b)}$</td></tr><tr><td>단가비</td><td>$\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bq}$</td></tr><tr><td>총액비</td><td>$\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ap + bq}$</td></tr><tr><td>구입원도액비**</td><td>$\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a + b) + (a + b)}$</td></tr></table> 이때 거래가격은 'b'원지 시장가치 + 중분가지 배분액 이므로, 사정보정치는 'b'원지 시장가치 / b'원지 거래가격(b'원지 시장가치 + 중분가지 배분액)이 된다. ㉓ 시장수정 거래시점과 기준시점 간 가치의 변동을 보정하는 절차로서, 자가변동률 적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table><tr><th>구분</th><th>적용</th><th>상세</th></tr><tr><td>원칙</td><td>거래시점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중분지역 자가변동률**</td><td> • 거래시점과 같은 중분지역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 공법상 제정이 비슷한 중분지역의 자가변동률, 이를 상충률 자가변동률(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문없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자취를 자가변동률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 또는 도시지역 안에서 중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해당지역의 자가변동률, 다만, 해당지역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비슷한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 거래시점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나 도시지역 안에서 중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이를 상충률 자가변동률을 적용한, 다만, 거래시점에 있는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비슷한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td></tr><tr><td>예외</td><td>생산자물가상승률**</td><td> • 조상비율 변동 기준으로 균등분가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td></tr></table> 자가변동률의 산정은 기준시점 직전 월까지의 자가변동률 누계에 기준시점 해당 월의 경과일수(해당 월의 첫날과 기준시점일수를 포함) 상당의 자가변동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하며,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넷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해당 월의 경과일수 상당의 자가변동률 산정은 해당 월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를 *1) 구입원도액비 = (합계 총 가치 - 합계 전 시구입원도액) / 시구입원도액 * 합계 총 가치 - 합계 전 시구입원도액 *2) "동등한 거래조건"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4 및 국토교통부령(제2014-12-15) 제12조 제1항 *3) "한국은행법, 제43조의 4 및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구분	중분가지 배분액 *1, 가의 가중 *	면적비	$\frac{[(a + b) \times r - ap - bq]}{(a + b)}$	단가비	$\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bq}$	총액비	$\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ap + bq}$	구입원도액비**	$\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a + b) + (a + b)}$	구분	적용	상세	원칙	거래시점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중분지역 자가변동률**	• 거래시점과 같은 중분지역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 공법상 제정이 비슷한 중분지역의 자가변동률, 이를 상충률 자가변동률(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문없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자취를 자가변동률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 또는 도시지역 안에서 중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해당지역의 자가변동률, 다만, 해당지역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비슷한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 거래시점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나 도시지역 안에서 중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이를 상충률 자가변동률을 적용한, 다만, 거래시점에 있는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비슷한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예외	생산자물가상승률**	• 조상비율 변동 기준으로 균등분가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rac{b}{c(=a+b)}$
구분	중분가지 배분액 *1, 가의 가중 *																					
면적비	$\frac{[(a + b) \times r - ap - bq]}{(a + b)}$																					
단가비	$\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bq}$																					
총액비	$\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ap + bq}$																					
구입원도액비**	$\frac{[(a + b) \times r - ap - bq] \times \frac{a}{p + q}}{(a + b) + (a + b)}$																					
구분	적용	상세																				
원칙	거래시점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중분지역 자가변동률**	• 거래시점과 같은 중분지역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 공법상 제정이 비슷한 중분지역의 자가변동률, 이를 상충률 자가변동률(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문없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자취를 자가변동률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 또는 도시지역 안에서 중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해당지역의 자가변동률, 다만, 해당지역의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비슷한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이나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 거래시점이 199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경우나 도시지역 안에서 중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이를 상충률 자가변동률을 적용한, 다만, 거래시점에 있는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비슷한 이들 상충률 자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자가변동률																				
예외	생산자물가상승률**	• 조상비율 변동 기준으로 균등분가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사유	오타 수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